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공고 제2024 - 1호

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명시 수도급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6일

광 명 시 장

1. 구 분 : 일부개정

2. 개정 이유

○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

○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

3. 주요내용

○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 완화 (안 제36조제1항)

-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(기존 3명 → 변경 2명)

○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 (안 제36조제1항)

-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을 현행 그대로 시행규칙에서 규정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의견 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**2024년 2월 15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(참조 : 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이유)

○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기관 : 광명시장(참조 : 수도과장)

○ 주 소 :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(우 14234)

○ 문의처 : 수도과(☎ 02-2680-2950)

의 견 제 출 서

☐ 자치법규명 :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광명시 조례 제 호

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6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학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”를 “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의2 중 “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”를 “유치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, 감면범위, 감면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.과		수도과
입안자	실.과장 직위.성명	수도과장 김태순
	담당.팀장 직위.성명	요금관리팀장 고정민 (02-2680-2950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36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	6. ---------- 2명 ----------
7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.	7. ---------- 학교.
7의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.	7의2. ---------- 유치원.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,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, 감면범위, 감면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췌 서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4조(독립채산)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.

1.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
2.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기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조제1항제6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10㎥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1세대당 월 10㎥ 감면

2) 450원(톤당 단가) × 10㎥ × 11,500세대 × 6월 = 310,500천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액	311	621	621	621	621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4년부터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○ 매년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금액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수도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이전 - 여성가족과 협의

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장 김태순